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조사 분석

Research and Analysis of Enactment of China's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한 미 경 (Mikyung Han)*

목 차

- | | |
|-------------------|----------------------|
| 1. 서 론 | 4. 고문헌 관리 법률과 규장의 분석 |
| 2. 연구의 배경 | 5. 종합분석과 시사점 |
| 3.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조사 | 6.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법체계와 고문헌 관리 정책을 살펴보고,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및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였다. 그중 고문헌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2013년의 법률 '중국문화유산보호법', 2) 1981년의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 3) 1986년의 부문규장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4) 2001년의 부문규장 '문화유산등급결정 표준', 5) 2003년의 부문규장 '문화유산경매관리 임시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고문헌 관리 정책의 중요성, 2) 국가 차원의 고문헌 관리, 3) 교육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4) 고문헌 관리 전문기구의 설치, 5) 중의고문헌 부문의 특별 관리 등의 중국 고문헌 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enactment of China's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For the purpose, the review on China's legal system and management related to old and rare books were studied. And this study investigated 4 laws, 6 administrative regulations, 4 sector regulations, and 13 administrative normativity papers. Among those, 5 major sources for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were identified as follows : 1) China's National Civilization Protection Law in 2013, 2) China's Old and Rare Book Organization Directive in 1989, 3) Regulation on Management of Research, Organization, and Publication of Old and Rare Books in 1986, 4) Standards on Grading Classification of Civilization Collections in 2001, and 5) Provisional Regulation on Civilization Auctioning in 2003.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sources, this study deduced implications in terms of Chinese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such as the necessity to give considerations to 1) the importance of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policy, 2) nationwide old and rare books management, 3) expan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4)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specializing in old and rare books, and 5) special management of science of Chinese medicine.

키워드: 고문헌, 법률, 부문규장, 중국, 행정법규

Old and Rare Books(Ancient Books), Law, Sector Regulations, China, Regulations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논문접수일자: 2018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8월 2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193-214,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3.19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은 청 멸망과 민국시기(1912-1949)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문화대혁명(1966-1976) 등을 거치면서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고문헌이 파괴되거나 약탈되고 심지어 해외로 유출 및 매각되는 등의 시간을 지내왔다. 현재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법제화를 기반으로 국가도서관 중심의 전국적인 고문헌 수집과 정리 및 보존 등 방면에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중 고문헌 관리를 위하여 인민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1950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고적·진귀문물·도서 및 희귀생물 보호조치(古跡·珍貴文物·圖書及稀有生物保護辦法)’와 ‘고문화유적지 및 고분의 조사발굴 임시조치(古文化遺址及古墓葬之調查發掘暫行辦法)’를 제정하였다. 이후 1963년에 우리나라의 부령에 해당하는 부문규장 ‘문물보호기관 보호관리 임시세칙(文物保護單位保護管理暫行辦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내 정황으로 고문헌 관리는 명분만을 이어왔다. 중국의 실제적인 고문헌 관리는 1980대 들어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행정법규 이후 고문헌 관리 행정정책이 구축되고 법제화되면서 중국의 고문헌 관리는 본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특히 국가도서관 중심 체제 하에 전국적 차원의 고문헌 관리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고문헌 관리 행정정책인 ‘국가 고문헌정리출판계획(國家古籍整理出版規劃)’

과 ‘중화고문헌보호계획(中華古籍保護規劃)’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고문헌의 수집과 관리 및 디지털화에 괄목한 만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즉, 고문헌 관리 정책과 법제화를 바탕으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고문헌의 정리와 국내외의 유출 고문헌의 적극적 수집 및 구입과 반환, 교육과 인적자원 시스템 및 국가의 예산 책정 및 홍보 등의 내적 인프라를 충실하게 구축하여 왔다. 또한 ‘중국고문헌보호계획’에 대한 2017년의 보고에 의하면 고문헌보호센터와 고문헌보호협회 등의 외적 인프라 구축 외에 국무원 주도의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여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제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서관법’, 도서관 종류별 법률, 특정분야 법률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특정분야의 법률 연구의 경우 일부 기록관리(강현민 2017)와 웹 아카이빙(김유승 2007) 및 오픈액세스(차미경, 송경진, 김나영 2017)와 같은 특정분야 관련 법률의 분석 또는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문헌 관리 관련 해외의 법제화 연구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도서관 문화수준 제고에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가 중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윤희운 2004, 24)을 바탕으로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고문헌 관리와 법제화의 제반 상황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중국의 법률과 행정법규 및 부문

규장 등의 법제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배경으로 중국의 법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현행 입법체제상의 입법권 분류를 살펴보고, 정책법규 체계인 법률과 행정법규 및 행정규장과 행정법 집행관리 영역과 행정소송 영역에서 근거가 되는 법정 효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규범성문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중국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배경으로 대표적인 국무원 주관의 양대 고문헌 관리 행정정책인 ‘국가고문헌정리출판계획’과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¹⁾ 다만, ‘중의 고문헌정리출판계획’과 같은 일부 전문 분야의 고문헌 관리 정책은 해당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셋째,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조사는 정책법규이자 중국 국가도서관 중심으로 진행된 고문헌 관리를 위한 주요 법제로서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나아가 중국 법체계에 따라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분석은 14종의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규장의 내용 조사를 통하여 고문헌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법률 ‘중국문물보호법(2013)’, 2)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1981)’, 3) 부문규장 ‘중의 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1986)’, 4) 부문

규장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2001)’, 그리고 5) 부문규장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2003)’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중국의 법체계와 중국 고문헌 관리의 근거이자 법제화의 배경이 되는 국무원 제정의 양대 행정정책인 ‘국가고문헌정리출판계획’과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중국의 법체계

중국의 현행 입법체제상의 입법권의 분류는 크게 국가입법권, 행정법규 제정권, 지방성법규 제정권, 자치조례와 단일(單行)조례 제정권 및 부문규장 및 지방규장 제정권으로 분류된다(문준조 2002, 41-3). 이를 법 제정기관과 법의 종류로 살펴보면, 1)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한 헌법과 법률, 2)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각 부문과 지방인민정부가 행정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한 법규와 규장, 3) 전국권력기관이 지방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한 지방성법규와 자치조례 및 단일조례 등의 형식으로 존재한다(김호정 2010, 59). 그중 지방성법규와 자치조례 단일조례는 지

1) 중국의 바이두 백과(Baidu 百科)에 의하면 ‘古籍’은 현대 인쇄기술을 채용하지 않은 서적을 의미한다. 또한 국립 고궁박물관은 ‘고적’은 ‘고서고적(古書古籍)’ 또는 ‘고서(古書)’라 명명하며,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고대에는 전적이라 칭하였고, 문헌으로도 불렸으며, 문서와 당안(檔案) 및 서적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적’ 또는 ‘고적문헌’ 등에 대하여 ‘고문헌’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방단위의 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책법규의 체계는 법률과 법규(이하 행정법규) 및 규장(이하 행정규장) 아래에 규범성문건(이하 행정규범성문건)으로 집행되고 있다(深圳市 鹽田區 人民政府). 이에 헌법 이하 법률과 행정법규 및 행정규장 외에 행정규범성문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준조 2002, 83-95).

첫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및 개정하는 기본 법률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 및 개정하는 기타 법률을 포괄한다. 즉, 기본적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고, 그 외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며, 국가주석은 이들 법률을 공포한다.

둘째, 행정법규는 1982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최초의 명확한 정의는 1987년 4월 21일 국무원이 비준한 '행정법규 제정프로세스 임시규칙(行政法規制定程序暫行條例)'이며, 동 조례 제2조에서 "행정법규라 함은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공작을 영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외사(外事) 등 각종 법규의 총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 용어로 '조례', '규정' 및 '세칙(辦法)' 등 세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셋째, 행정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문이 제정하며, 범위는 '당해 부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이다. 당해 부문이 규장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 부문과 관련되고 그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 구체적인 규칙 또는 표준에

속하는 문제, 당해 부문의 관할사항에 속하는 법률 또는 행정법규 세칙, 수권입법 세칙 등이다. 행정규장은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이 있다. 그중 부문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문이 제정하며, 지방정부규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와 성, 자치구 소재지의 시 및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와 경제특구 소재지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규장이다.

넷째, 행정규범성문건은 정식의 입법행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정식의 행정입법에 속하지도 않는다(정이근 2005, 520). 즉, 행정규범성문건은 '법원(法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정식의 입법절차에 의한 법원성 규범과 함께 추상적 행정행위로서 법정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행정규범성문건도 행정법 집행관리 영역과 행정소송 영역에서 근거가 되는 법정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김호정 2010, 59).

이상과 같이 중국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단일조례, 행정규칙 등이 있으며, 정식의 입법절차에 의한 법원성 규범과 함께 추상적 행정행위로서 법정효력이 발생하는 행정규범성문건이 있다. 참고로 중국의 법률과 행정법규가 우리나라의 법률과 대통령령에 해당하며, 부문규장은 우리나라의 부령으로 시행규칙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적 성격과 해석 및 적용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김호중 2010, 59주19).

2.2 중국의 고문헌 관리 정책

중국의 고문헌 관리 정책은 국무원 주도하에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국가고문헌정리출판계획’과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행정정책에 발맞추어 고문헌 관리 법제화가 추진되고 국가 차원의 고문헌 관리가 진행되어 왔다.

2.2.1 국가고문헌정리출판계획

중국은 1919년 5·4운동 이후 출판계와 학술계에서 고문헌 정리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 대량의 고문헌을 정리 출판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문헌 정리 사업을 이어나갔으며, 1958년 국무원은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고문헌 관리 행정정책을 제정하였다. 현재의 전국고문헌정리출판계획 지도팀(全國古籍整理出版規劃領導小組)은 1958년 구성되었으나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단되었다가 1981년에 활동을 재개되었다. 주요 기능은 국가고문헌정리출판사업의 주관이다.

1981년 ‘중국고문헌정리지시(4.2 참조)’를 통하여 고문헌 정리는 귀중한 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중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국무원이 ‘고문헌정리출판계획팀’을 회복시키고 고문헌관리 행정정책인 ‘1982-1990년 고문헌정리출판계획(일명 9년계획)’을 제정하였다. 이는 현재 ‘일오 국가고문헌 정리·중점도서 출판계획 기초’ 이후 십삼오 정책인 ‘십삼오국가중점도서·음향·전자출판계획(十三五國家重點圖書·音像·電子出版物出版規劃)’을 추진하고 있다.²⁾

중국의 국가고문헌정리출판계획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십일오 정책인 ‘십일오 국

가고문헌정리중점도서출판계획(十一五國家古籍整理重點圖書出版規劃)’은 2006년 4월 13일에 ‘신출연(新出聯)[2005]8호’로 반포된 주요 고문헌 관리 행정정책이다. 이 계획은 ‘중양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11번째 5개년 계획 건의’와 1981년의 ‘중국고문헌정리지시’의 정신에 의거하고 ‘일오 국가고문헌 정리·중점도서 출판계획 기초’를 총결하여 제정된 것이다. 특히 출판단위와 주관부문의 보고 및 전문 학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중심의 고문헌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심의와 연구를 거듭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2.2.2 중화고문헌보호계획

2007년 국무원판공청(辦公廳)에서 ‘고문헌 보호사업의 진일보 강화 의견’(국판발(國辦發)[2007]6호)을 기반으로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을 반포하였다.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은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고문헌 관리 행정정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고문헌 실태의 일괄조사와 연합목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실시한다. 2007년부터 3-5년 동안 전국의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교육, 종교, 민족, 문물기관 등에 대하여 고문헌의 수장 및 보호 상황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일괄 조사를 실시한다. 나아가 중화고문헌 연합목록과 고문헌 디지털정보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둘째, 고문헌의 등급별 관리와 보호를 실천한다. 이에 ‘국가귀중고문헌명부(國家珍貴古籍名

2) ‘일오’ 계획은 1953년부터 1957년까지의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경제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고문헌관리계획도 본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십일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11번째 5개년 계획의 줄임말로써 ‘일오’계획 이래 현재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십삼오’ 계획까지 진행되고 있다.

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고문헌 등급별 관리와 보호를 실천한다.

셋째, 고문헌 관리의 표준화를 구축하고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전국고문헌중점보호기구(全國古籍重點保護單位)’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고문헌서고 표준화를 구축하고 고문헌 수장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고문헌 보호 전문가 양성과 고문헌 보호 사업체계를 구축한다. 즉,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문헌보호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고문헌 수선복원 업무와 기초적 실험연구 업무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완전한 고문헌보호사업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고문헌의 정리, 출판 및 연구와 이용 그리고 디지털화와 마이크로화 작업을 강화한다. 고문헌의 정리, 출판 및 연구와 이용을 더욱 강화하고 특별히 현대적 기술을 응용하여 고문헌의 디지털화와 마이크로화 작업을 강화하여 ‘중화고문헌보호네트워크(中華古籍保護網)’를 구축한다.

이 정책은 특히 같은 시기의 행정정책인 ‘십일오 국가고문헌정리중점도서출판계획’ 완성과 고문헌의 전면적인 보호를 계획한 것이다. 즉,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은 ‘국판발[2007]6호’로 고문헌의 수장 및 보호 상황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괄 조사의 실시, 국가 차원의 고문헌의 등급별 관리와 보호, 고문헌서고의 표준화 구축과 고문헌 수장환경의 개선, 고문헌보호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고문헌의 디지털화와 마이크로화 강화로 ‘중화고문헌보호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중화고문헌보호계획’ 정책 실천을 위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규장 등이 제정 반포되었으며, 고문헌관(古籍館) 운영, 전문적 고문헌 관

리 인프라의 구축 및 도서관 문화 수준 제고 등의 결과를 이루었다.

3.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조사

순수법학을 제창하고 법 단계설을 수립한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고 켈젠(Kelsen Hans)에 의하면 실정법 구조는 일종의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구조 또한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및 이하 행정규범성 문건으로 위계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3.1 법률

중국 국가도서관 중심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 조사 정리하면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과 같이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률은 ‘중국문화유산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 2013, 국무원령 제377호)’, ‘중국비물질문화유산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 2011, 주석령 제42호)’, ‘중국 공공도서관법(中華人民共和國公共圖書館法)’, ‘중국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公共文化服務保障法)’이 있다.

‘중국문화유산보호법’은 1982년에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나라의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주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총칙, 이동불가문화유산, 고고발굴, 소장문화유산, 문화유산의 출국과 입국, 법률책임 및 부칙의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비물질문화유산법’은 2011년에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표 1〉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률과 행정법규 및 부문규장

종류	제목	제정기관	제정년
법률	1) 중국문화유산법	1) 국무원	1) 1982
	2) 중국비물질문화유산법	2) 주석	2) 2011
	3) 중국공공도서관법	3)4) 전국인민대표대회	3) 2018
	4) 중국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		4) 2017
행정법규	1) 고문헌·진귀문물·도서 및 희귀생물보호조치	1) 정무원	1) 1950
	2) 고문화유적지와 옛 고분의 조사발굴 임시규칙	2) 정무원	2) 1950
	3) 문화혁명기간 산실 진귀문물과 도서회수 규정	3) 국무원	3) 1980
	4) 중국고문헌정리지시	4) 중앙	4) 1981
	5) 중국문화유산보호법실시조례	5) 국무원	5) 2003
	6) 제일차 전국 이동가능문물 일제조사 전개 통지	6) 국무원	6) 2012
부문규장	1) 문화유산보호법시행규칙	1) 국무원	1) 1963
	2)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의 관리규칙(시행)		2) 1986
	3) 문화유산등급결정 표준	3) 문화부	3) 2001
	4) 문화유산관리 임시규정		4) 2003

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비물질 문화유산의 조사와 명부 작성 등을 주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총칙, 비물질문화유산의 조사, 비물질문화유산의 대표항목 명부, 비물질문화유산의 전승과 전파 및 법률책임과 부칙 등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공공도서관법’은 2017년 11월 4일에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8년 1월1일 시행된 것으로 공공도서관 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에 해당되는 법률은 없으며, 이 법률이 유일하다. 총칙, 설립, 운영, 서비스, 법률책임 및 부칙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은 2016년 12월 25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공문화시설의 건설과 문화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총칙, 공

공문화시설 건설과 관리, 공공문화서비스의 제공, 보장 조치, 법률책임 및 부칙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중국 고문헌 관리는 이상의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및 공공도서관 운영 및 문화서비스 관련 4종 법률의 상호 해석과 적용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중 국무원령 377호인 ‘중국문화유산보호법’의 경우 고문헌 관리의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2 행정법규

〈표 1〉과 같이 중국의 고문헌 관리 행정법규는 1950년에 규정된 정무원의 ‘고문헌·진귀문물·도서 및 희귀생물 보호조치’와 부록의 ‘고문화유적지와 옛 고분의 조사발굴 임시규칙’이 있으며, ‘문화혁명기간 산실 진귀문물과 도서회수 규정(收回文化革命期間散失的珍貴文物和圖書的規定 1980)’, ‘중국고문헌정리지시(1981)’

및 중국문화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實施條例 2003)가 있다.

‘고문헌·진귀문물·도서 및 희귀생물 보호조치’와 ‘고문화유적지와 옛 고분의 조사발굴 임시규칙’은 중국의 모든 명승고적과 지하에 수장된 것과 각처에 흩어져있는 혁명, 역사, 예술 관련 일체의 문물도서의 조사와 고문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중앙과 국무원의 ‘문화혁명기간 산실 진귀문물과 도서 회수 규정’은 문화혁명 기간에 파괴 및 약탈된 문물과 도서 회수 및 문물보호를 위해 특별히 규정한 조치로서 국가문물사업관리국이 관리하고 모든 문물관리 부서 수장의 문물과 도서는 모두 국가의 귀중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고문헌정리지시’는 1981년 9월 17일 행정법규 ‘중발(中發)[1981]37호’로 제정된 것이다.

한편, ‘중국문화보호법’은 전술의 ‘중국문화보호법’ 의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는 주로 예산과 경비 관련 조례로서 총칙, 이동불가문물, 고고발굴, 소장문물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2조에 따르면 국가중점문화유산 전문항목 보조경비와 지방문화유산 전문항목 경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주관부문과 투자주관부문 및 재정부문에서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일차 전국 이동가능문물 일제조사 전개 통지’는 국무원이 제정한 전국 유형문화재 일제조사 실시 행정법규이다. 이는 ‘십이오(2011-2015) 시기 문화개혁발전계획요강’에 의거하여 국무원이 결정한 것으로 ‘국발(國發[2012]54호’이다. 현재 중국은 이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고문헌 일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상의 행정법규는 전국의 흩어진 문물의 조사와 보호, 예산과 경비, 문물보호 및 이동가능문물의 전국적 일제조사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그중 ‘중국고문헌정리지시’는 고문헌 관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법규이며, 이 행정법규의 제정 이래로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와 구체적인 사업 전개가 이루어져 왔다.

3.3 부문규장

부문규장은 기관이나 전문분야의 규정으로 <표 1>과 같이 ‘문물보호기관 보호관리 임시세칙(文物保護單位保護管理暫行辦法 1963)’,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시행)(中醫古籍文獻研究整理出版的管理辦法(試行) 1986)’,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文物藏品定級標準 2001)’,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文物拍賣管理暫行規定 2003)’이 있다.

우선 ‘문물보호기관 보호관리 임시세칙’은 1961년 3월 4일 국무원 반포의 ‘문물보호관리 임시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은 중의학 고문헌 관리에 대한 전문 규장으로 전국 중의고문헌연구 정리 출판 업무의 과학적 관리 강화와 ‘중의 고문헌 정리 출판 계획’의 실현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한편,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은 2001년 4월 5일 문화부에서 제정한 일종의 표준이다. 이는 상술의 ‘중국문화보호법’과 ‘문물보호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히 제정된 것이다.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은 특히 1949년 이전의 문물경매의 표준규범 관리를 강화하

고 중국역사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술의 ‘중국문화유산 보호법’과 ‘경매법(中華人民共和國拍賣法)’ 및 상술의 ‘문화유산보호법실시조례’ 등에 의거하여 2003년에 제정된 규정이다. 제2조에서 본 규정에 적용되는 경매활동이 가능한 경매대상 물품 5항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상의 부문규장은 문화보호단위, 중의고문헌, 문화소장품 등급, 문화경매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나 부문에 대한 규정이다. 이들 중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의 관리규칙(시행)’은 중의고문헌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소장품 등급결정 표준’ 및 ‘문화재 관리 임시 규정’은 고문헌 등급과 문화재 경매 관련 부문규장이다.

3.4 행정규범성문건

중국 중앙정부와 기관 등에 의하여 제정 및 지시된 행정규범성문건을 시대별로 조사 정리

하면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행정규범성문건의 제정을 통하여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중국의 고문헌 관리의 시계적 전개를 볼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중국 경공업부의 구판서적의 펄프원료 사용금지와 중앙의 무산계급에서의 문화대혁명 중의 문물 및 도서 보호 의견이 통보되었다. 1970년대 들어 국가문화사업관리국의 소장문화도서의 해외 판매품으로의 매각 엄금 통지, 국가출판사업관리국과 국가문화사업관리국의 고문헌 수출 감정 문제 공문 그리고 국가문화사업관리국과 국가지진국의 진일보한 지진 고고 작업 관련 의견이 지시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에는 국무원 사무청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게 소수민족 고문헌의 긴급구조 및 정리 보고 외에 중국고문헌 정리 출판 10년 계획과 팔오(1991-1995)계획 그리고 고문헌정리 및 현대어로의 번역 및 출판관리가 지시되었다.

<표 2> 행정규범성문건

년대	행정규범성문건	제정기관	제정년
1950	1) 구판서적의 펄프원료 사용금지	1) 중앙정부 경공업부	1) 1951
1960	2) 무산계급의 문화대혁명 중 문물 및 도서 보호	2) 중앙정부	2) 1967
1970	3) 소장문화도서의 해외판매품으로의 매각 엄금 4) 고문헌 수출 감정 문제 공문 5) 진일보한 지진 고고 작업 의견	3) 국가문화사업관리국 4) 국가출판사업관리국 · 국가문화사업관리국 5) 국가문화사업관리국 · 국가지진국	3) 1973 4) 1976 5) 1978
1980	6) 국가민족 전송의 소수민족 고문헌의 긴급구조 및 정리 보고 지시	6) 국무원 판사청	6) 1984
1990	7) 중국고문헌 정리 출판 10년 계획과 팔오계획 8) 고문헌정리 및 현대어로의 번역 및 출판관리		7) 1992 8) 1995
2000	9) 전국고문헌보호업무의 부서간 연합회의 제도 10) 전국고문헌보호업무 전문가위원회 설립	10) 문화부 판공청	9) 2007 10) 2007
2010	11) 고문헌 보호 업무의 진일보 강화 통지 12) 문화재 복제 탁인 관리 조치 13) 십삼오시기 문화발전개혁계획	11) 문화부 13) 문화부	11) 2011 12) 2011 13) 2017

2000년대 들어 십일오계획과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행정규범성문건이 등장하게 된다. 2007년의 전국고문헌보호협의 부서간 연합회의 제도, 전국고문헌보호업무 전문가위원회 설립과 문물출입국심사 관리조치 외에 2011년의 고문헌 보호 업무의 진일보 강화 및 문물 복제 탁인 관리 조치가 지시되었다. 최근에는 문화부에서 ‘십삼오시기 문화발전개혁계획’을 지시하였다.

4. 고문헌 관리 법률과 규장의 분석

이상으로 조사한 고문헌 관리 4종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및 4종의 부문규장 중에서 고문헌 관리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국문물보호법’, ‘중국고문헌정리지시’, 그리고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규칙’과 ‘문물소장품 등급 결정 표준’ 및 ‘문물경매관리 임시 규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4.1 중국문물보호법

‘중국문물보호법’은 중국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표적인 고문헌 관리 법률이다. 이는 ‘국무원령 제377’로 문물보호의 강화,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과학연구의 촉진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1982년 11월 19일 제정 이후 1991년

1차 수정, 2002년 2차 수정, 2013년 3차 수정에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칙, 이동불가문물,³⁾ 고고발굴, 소장문물, 민간수장문물, 문물의 출국과 입국, 법률책임 및 부칙의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고문헌 관리 규정을 선별 및 분석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그중 중국내 국가적 차원의 보호 문물의 범위와 종류를 보면 ‘역사상 각 시대의 중요한 문헌자료 및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원고와 도서자료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물사업은 고문헌 보호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긴급구조 제일 및 관리 강화의 방침을 관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내 지하, 수역과 영해 중에 남겨진 일체의 문물은 국가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유의 이동문물의 소유권은 그 보관 및 수장 단위의 정지 또는 변경으로 바뀌지 않으며, 국유문물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문물보호사업은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이 주관하고 각 지방정부가 각각 행정구역내의 문물보호와 감독관리 책임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 인민정부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과 예산,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예산, 홍보교육과 의식강화 그리고 정신적 및 물질적 격려와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문물보호법’은 고문헌 관리 상위 법률로 고문헌은 중국내 국가적 차원의 보호 문물의 범위에 포함되며, 원고와 도서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며 그중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중국은 이동가능문물과 이동불가문물로 구분하고 고문헌(古籍)은 이동가능문물에 분류된다.

〈표 3〉 중국문물보호법의 고문헌 관리 주요 내용

조	내용	비고
2	• 4항 역사상 각 시대의 중요한 문헌자료 및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원고와 도서자료 등	• 중국내 국가적 차원의 보호문물의 범위와 종류
3	• 문헌과 원고 및 도서자료 등의 이동가능 문물은 귀중문물과 일반문물로 분류, 귀중문물은 일급문물, 이급문물, 삼급문물로 분류	• 보호대상 문물의 등급 분류
4	• 문물업무는 보호위주, 긴급구조 제일, 합리적 이용, 관리 강화의 방침을 관철	• 문물사업의 방침
5	• 국경내 지하, 수역과 영해 중 남겨진 일체의 문물은 국가소유	• 문물의 소유
	① 중국 국경내 출토된 문물, 국가의 별도 규정은 제외 ② 국유문물수장단위 및 기타국가기관, 부대 및 국유기업, 사업조직 등 수장 및 보관 문물 ③ 국가 수집 및 구입 문물 ④ 공민 및 법인과 기타 조직이 기증한 국가의 문물 ⑤ 법규정의 국가소유의 기타 문물	• 국가 소유 이동문물의 종류
	• 국가소유의 이동문물의 소유권은 그 보관 및 수장 단위의 정지 또는 변경으로 바뀌지 않음	• 문물 소유권의 변경과 법률 보호
	• 국유문물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침범 용인 불가	• 국유문물소유권의 법적 보호
	7	• 모든 기관, 조직 및 개인은 법에 의거하여 문물보호 의무
8	• 국무원 문물 행정부에서 전국 문물보호사업 주관	• 문물보호의 주관
	•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의 문물보호사업 책임 • 현급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문물보호사업 부문의 본 행정구역내의 문물보호 실시 감독관리 책임 • 현급이상 인민정부 유관행정부문은 각 책임범위 내에서 유관 문물보호업무 책임	• 지방정부의 문물보호 책임
9	• 각급인민정부는 반드시 문물보호를 중시하고 경제건설, 사회발전 및 문물 보호의 관계를 정확히 하고, 문물안전을 확보해야 함	• 각급 인민정부의 역할
10	• 국가는 문물보호사업을 발전시켜야 함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문물보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소요경비를 경제예산에 안배해야 함	• 국가의 역할과 예산
11	• 문물은 재생불가의 문화자원 • 국가는 문물보호 홍보교육을 강화, 전국민의 문물보호의식을 증강, 문물보호의 과학적 연구를 장려, 문물보호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해야 함	• 국가의 홍보교육과 국민의 의식 강화
12	• 이하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가가 정신적 격려 또는 물질적으로 보상 ① 문물보호 법률, 법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문물보호 성적이 현저한 경우 ② 문물보호를 위하여 위법 범죄행위와 결연히 투쟁한 경우 ③ 개인 소장자의 중요 문물을 국가에 기부 헌납하거나 문물보호 사업을 위해 기증한 경우 ④ 문물 발견 즉시 상부에 보고하거나 상납하여 문물이 보호되도록 한 경우 ⑤ 고고 발굴 작업 중 중대 공헌을 한 경우 ⑥ 문물보호 과학기술 방면에 중요 발명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⑦ 문물 파괴 위험 직면시 문물 긴급 구조에 공헌이 있는 경우 ⑧ 문물 작업에 장기적으로 종사하고 현저한 성적을 이룬 경우	• 국가의 보상

4.2 중국고문헌정리지시

‘중국고문헌정리지시’는 중앙서기처 천윈(陳云, 1905-1995)이 발의하고, 중앙정부에서 고문헌 정리 문제의 시급함을 인지,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1981년 9월 17일에 ‘중발 1981 37호’로 제정한 행정법규이다. 그중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중국고문헌정리지시’는 인문교육의 강화, 고전 독서, 장기적 교육의 필요와

인적자원의 점진적 및 장기적 준비, 30년 계획 설정과 기획 팀의 결성, 안전조치와 국가차원의 회수, 교육과 인재의 안배와 재배치 그리고 국가차원의 예산편성과 인적자원의 업무와 생활조건 등 일곱 가지를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고문헌정리지시’는 교육과 인적자원을 강조하고 계획과 기획, 지도 및 국가적 차원의 고문헌 회수 조치와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고문헌정리지시’는 이듬해

<표 4> 중국고문헌정리지시의 고문헌 관리 주요 내용

조	항목	내용	비고
1	• 인문교육의 강화	① 고문헌은 국가의 중요문화유산을 계승 ② 이공 학도도 문화전통 지식을 익힐 필요가 있고, 대학의 문화교육 강화, 초등학교부터 고문 독서	① 고문헌의 중요성 ② 문헌 정리의 방향
2	• 고전 독서	① 표점, 주석, 교감 및 훈고의 고문헌 독서는 어려우므로 현대중국어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	① 고문헌 정리 방법
3	• 장기적 교육필요 • 인적자원의 점진적 및 장기적 준비	① 고문헌 정리지 10년간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속적인 핵심역량 유지가 필요 ② 고문헌정리전문가는 기초 지식과 열정 필요 ③ 참여자는 중화서국, 문화부, 교육부, 사회과학원, 국가출판국 등 기관의 책임자 ④ 고문헌정리출판기획팀 ⑤ 국무원 직속	① 고문헌 정리 기관과 역량 ② 고문헌 정리 전문가 ③ 참여자의 구성 ④ 팀의 구성 ⑤ 주관기관
4	• 30년 장기계획 • 기획 팀의 결성	① 30년을 10년 단위, 두 개의 5개년으로 계획 ② 전문 기획팀의 구성 ③ 기획팀은 30년간의 고문헌 정리 출판 계획	① 사업 기간 ② 팀 구성 ③ 팀의 역할
5	• 안전조치 • 국가차원의 회수 조치	① 일부 고문헌의 고본(孤本)과 선본의 보호와 강제구조 조치, 도서관의 안전조치 ② 국외 산일 고문헌은 각종 방법으로 회수 또는 복제, 체계적으로 고본과 선본을 영인 번각	① 일부 고문헌의 고본과 선본의 조치 ② 국외 산일 고문헌의 회수
6	• 교육기관 • 인재의 안배와 재배치	① 고문헌 정리 교육기관은 고등교육기관 의탁, 기초와 조건이 갖추어진 일부 대학에 고문헌연구소 설립, 일부 인문대학의 고문헌 전공의 적절한 규모 확대 ② 고문헌 정리 전문 인재의 적절한 분배와 재배치 필요	① 고문헌 정리 교육기관 ② 고문헌 관리 인재의 배치
7	• 예산 편성 • 인적자원의 업무와 생활조건	① 예산 편성과 경비항목은 국가 차원의 사업지지 필요 ② 고문헌 정리 전문 인재에게 우수한 업무조건과 생활조건 구비 필요 ③ 지도팀의 조직 계획 구축과 조치 구체화	① 예산 편성과 경비항목 ② 고문헌 정리 전문 인재 ③ 지도팀의 조직

인 1982년의 '중국문화보호법' 제정의 기반이 되었으며, 중국의 고문헌 정리 문제의 심각성 인지와 국가 차원의 전국적 관리의 현실화와 이루어진 중요 행정법규라 할 수 있다.

4.3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규칙'은 대표

적인 전문분야의 부문규장으로 중의학 분야 고문헌에 대한 법제이다. 이는 실제 중의과학연구의 주요 분야로 중국 위생부(衛生部)의 행정정책인 '중의고문헌정리출판계획'의 일환이며, 1986년에 전국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업무의 과학적 관리 강화 실천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의 고문헌 관리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지도자 조직	1. 국가중의관리국 중의고문헌정리출판실 2. 국가중의관리국 중의고문헌문헌연구정리출판 학술위원회 3. 성시(省市)위생청중의처(또는 성(省)중의고문헌정리사무실) 4. 성시 위생청	3. 각 성의 중의고문헌연구정리의 조직 지도 책임 4. 3-5명의 전문가로 구성
전문 기구	1. 각급 중의고문헌연구소(실) 2. 중의고문헌연구정리 전문기구 연구소(실)	1. 중의고문헌연구정리업무 수행의 전문기구 2. ① 조건을 갖춘 성시, 중의대학, 중의연구원(소)는 반드시 중의고문헌연구정리 전문기구를 설립, ② 각급 중의 주관부문은 반드시 중의고문헌연구소(실)에 제반시설과 인적자원을 구비
전문 단체	전문 팀	중의고문헌연구 정리에 종사하는 전문인적자원
임무 안배	1. 임무의 안배와 과제의 안배 및 조정 2. 과제 유별 및 목적 요구 3. 계획 선정, 요구 등의 각 유관기관에 하달 4. 응찰기관 및 과제 수행인의 실제수준,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의 비교, 심의의견 제출 등 5. 응찰기관과 과제담당자의 계약 서명 등	1. 중의고문헌정리출판실의 책임 2. 중의고문헌문헌연구정리출판 학술위원회 심의의견제출, 중의고문헌정리출판실의 심사 결정 3-5. 중의고문헌정리출판실 책임
성과 평가	1. 절차대로 성과의 평가 신청 및 참가 2. '급별관리, 동료심사'의 원칙 준수 3. 성과별 명예와 물질 보상	1. 중의고문헌연구정리는 중의과학연구의 주요 구성 2. 각급의 과기 및 중의행정부조직의 전공 전문가의 평가 3. 기관 또는 개인 대상
예산 출처	1. 국무원, 국가중의관리국에서 중의고문헌정리출판실에 계 발급되는 전문항목 보조경비 또는 연구경비 2. 각 성시의 중의고문헌연구정리에 사용되는 전문항목 경비와 과연 경비 3. 각 중의대학, 중의연구원(소) 및 유관기관의 사업비 4. 각 출판부문이 계약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이윤 로얄티	• 부, 성, 원(소) 3급 과학연구관리 절차에 따라 구분 1. 중앙 2. 지방 3. 교육 및 유관기관 4. 출판부
기타	예산 용도와 경비 사용	• 중의고문헌정리출판실의 전문보조비

〈표 5〉와 같이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은 중앙과 각 성시의 지도자조직, 전문기구, 전문단체, 임무의 안배, 성과평가, 예산의 출처, 예산 용도와 경비사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총괄 기구는 국가중의관리국 중의고문헌정리출판실이며, 임무안배와 예산용도 등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급의 중의고문헌연구소(실)과 중의고문헌연구정리 전문기구 연구소(실)을 두고 반드시 중의고문헌연구 정리에 종사하는 전문 인적자원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198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의학 분야 부문규장으로 해석권도 중의관리국 중의고문헌정리출판실에 속해 있다.

4.4.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은 2001년 문화부 제정의 부문규장으로 ‘중국문물보호법’과 ‘중국문물보호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히 제정된 표준 성격의 법제이다. 문물소장품은 ‘귀중문물’과 ‘일반문물’로 구분하며, 귀중문물은 일급, 이급 및 삼급으로 구분한다. 즉, 특별히 중요한 역사와 예술 및 과학적 가치를 기

준으로 하되 대표적 문물은 일급문물, 중요 가치 문물은 이급문물, 비교적 중요 가치 문물은 삼급문물, 그리고 일정 가치 문물은 일반문물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일급문물 등급 표준, 2) 이급문물 등급 표준, 3) 삼급문물 등급 표준, 4) 일반문물 등급 표준, 5) 박물관과 문물기관 등 문물수장기구의 문물감별 및 선별과 등급 결정과 그 외 문물의 등급결정 시의 적용 표준의 명시, 6) 해석 책임기관 국가문물국의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은 일급문물 등급 표준 사례로 옥과 석기, 도기, 자기, 철기, 금은기, 칠기, 조소, 석각 전와(磚瓦), 서법회화, 벼루(古硯), 갑골, 쇠인부패(璽印符牌), 전폐(錢幣), 아골각기(牙骨角器), 죽목조, 가구, 범랑, 직수(織綉), 고문헌선본, 비첩탁본,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 일급문물로 선정되는 고문헌선본에 대한 기준을 분석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일급문물로 선정되어 고문헌선본이 되는 경우는 시기적으로 원(元) 이전과 명청(明清)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 이전의 경우 모든 고문헌은 비첩 외에 필사본과 간인본 모두 일급문물의 선본으로 선정된다. 명청의 경우 필사본과 간인본을 대상으로 하되 필사

〈표 6〉 일급문물 선정 대상의 고문헌선본 등급결정 기준

시기	내용	비고
원 이전	①비첩 ②사본 ③인본	• 범위: 고대-원(-1368)
명청	①저명한 학자와 장서가 저술 또는 정리 교정한 것 ② ①의 일부 학문영역 또는 중요 가치가 있는 고본과 초본 ③도서의 내용, 판각의 수준, 종이, 인쇄, 장정 등 방면에 특색이 있는 청의 인본, 초본 ④저명한 학자와 장서가의 비교제발(批校題跋) ⑤④의 비교제발의 내용이 중요 학술자료 가치가 있는 인본과 초본	• 범위: 명청(1368-1912) • ③의 인본의 경우 각본, 활자본, 정교하고 아름다운 판화가 있는 인본, 책색투인본 포함

본은 고본과 초본, 간인본은 초본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저술과 정리 교정한 것 외에 비교(批校)와 제발(題跋)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형태사항인 판각, 종이, 인쇄, 장정 역시 선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5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은 문물경매의 표준 규범 강화와 중국역사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하여 ‘중국문물보호법’과 ‘중국경매법’ 및 ‘문물보호법실시조례’ 등의 유관 법률과 법규에 의거, 2003년에 제정된 부문규장이다.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중국의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은 경매물품, 경매불가물품, 합법적 경매기업과 경매 전문인의 심사와 자격, 경매물품의 경매전 심사와 보고, 자격 심사와 자격증 교부 기구와 보고 및 등록 기구, 경매 물품의 출국 휴대, 국외 구입 경매 물품과 국외 경매물품의 경매 후 출국, 귀중 문물에 대한 국가의 경매 우선권과 경매 입찰인의 범위 한정권 및 온라인 경매활동과 규정 위반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제12조의 경매불가대상 문물 조항 중 제8항의 기타 법률과 규범에 의거하여 유통되면 안되는 문물을 살펴보면 ‘문물보호법’에 의거 청나라까지의 고문헌은 경매할 수 없다. 다만 정의 제2조에 의거 1949년 이전의 문헌자료 및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친필원고와 도서자료는 경매가 가능하다. 한편, 제16조에서 귀중문물에 대한 우선경매권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국가문물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 행정부문은 문물경매기업에게 경매물품 중 특별히 중요한 역사, 과학,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물은 반드시 경매와 경매입찰인의 범위를 문물수장기구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선본으로 규정되는 청나라까지의 고문헌은 경매불가의 물품이며, 1949년까지의 민국시기 원고나 문헌은 문물경매기업과 전문경매인에 의한 법적 경매가 가능하다. 문물경매 주요 기구는 국가문물국과 지방 문물행정부문 및 문물출입국심사기구로 문물경매기업과 경매 전문인의 자격 심사와 계속 심사 및 물품의 경매 전 보고와 등록 등 관련 사항을 주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구매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할 수 있는 대상은 공민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가의 경매 우선권과 경매입찰인 범위 한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민국시기의 고문헌의 경우 공개적으로 합법적 경매를 통하여 매수와 매도 가능하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과 국가문물국의 자격부여와 심사, 보고 및 등록되고 있다.

5. 종합분석과 시사점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로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및 4종의 부문규장과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고 그중 고문헌 관리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1종의 법률과 1종의 행정법규 및 3종의 부문규장을 분석하였다. 이장에서는 이를 종합분석하고 중국 고문헌 관리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문물 경매관리 임시 규정의 주요 내용

조	내용	비교
2	• 경매대상 물품의 종류	• 5종의 규정된 경매대상 물품의 경매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 - 2항 1949년 이전의 문헌자료 및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친필원고와 도서자료
3	• 경매기업의 문물경매허가증 신청	• 합법적으로 설립된 경매기업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쳐 국가문물국의 문물경매허가증 신청
4	• 문물경매허가증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의 심사의견 등 4종
5	• 문물경매허가증 신청후의 절차와 주의 사항	• 국가문물국은 신청 접수 후 30일 근무일 내에 비준과 비준불가 결정 • 비준 시 허가증 교부, 비준 불가 시 이유 설명 • 문물경매허가증은 대여, 양도불가
6	• 문물경매 중사 전문인의 조건과 자격	• 3종의 지식과 능력
7	• 문물경매전문인의 자격과 자격증	• 문물경매전문인의 자격: 국가문물국 인정 • 문물경매전문인자격증 발급
8	• 문물경매기업과 문물경매전문인의 자격 심사기구와 심사빈도	• 심사 기구: 국가문물국 • 문물경매허가증을 취득한 경매기업과 문물경매전문인 자격증 취득인 년1회 심사
10	• 문물경매기업의 경매 예정 물품의 심사	• 심사 기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 • 문물경매기업이 경매한 문물은 경매 전에 반드시 심사
11	• 경매 물품 심사의견의 보고	• 보고 기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 • 보고 시기: 반드시 경매공고 발표 15일전 • 보고 대상 기구: 국가문물국에 보고 등록
12	• 경매 불가 물품의 종류	• 8종의 경매 불가 물품 - 1항 법률 의거 반드시 국가에 반납해야할 국경내 출토 문물 - 6항 비국유소장 귀중문물 - 8항 기타 법률과 규범 의거 유통 불가 문물
13	• 경매 물품의 출국 휴대	• 고지 기구: 문물경매기업 • 고지 내용: 문물경매물품의 출국시 휴대 가능 여부는 사전에 문물출입국심사기구에 문의
14	• 국외 구입 경매 물품	• 문물경매기업의 국외 구입 문물의 경매 목적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 • 입시입국문물의 국경내에 체류시간: 최대 12개월, 특수 경우 연기수속 후 6개월 이내
15	• 국외 경매물품의 경매 후 출국	• 이하의 경우 국가의 개인 휴대문물 출국 규정에 따라 수속 처리 - 1 항 매수인이 중국 국민이거나 법인 - 2 항 국경내 체류시간이 당해법 14조 규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16	• 국가의 경매 우선권	• 국가: 귀중문물에 대한 우선경매권 • 국가문물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 문물경매기업에게 경매물품 중 특별히 주요한 역사, 과학,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물은 반드시 경매와 경매입찰인의 범위를 문물수장 단위로 한정하도록 요구 가능
17	• 경매 문물의 등록	• 경매 기록 시기: 문물경매기업은 반드시 문물경매 활동 완료 후 30일 내에 문물보호법실시조 례 4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보고 • 경매 기록 기구: 해당 경매기록소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에 등록 보고 • 국가가 우선 구매할 문물: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이 국가문물국에 등록 보고
18	• 온라인 경매 활동	• 문물경매기업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의 비준 없이 상호간 인터넷 경매활동 불가
19	• 규정 위반의 경우	• 문물경매기업의 본 규정 위반시 문물행정부문분이 책임지고 정정을 명령 • 심각한 경우 원본 허가증 회수 및 취소

5.1 종합분석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조사 분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고문헌 관리는 국무원 주관의 국가적 차원의 행정정책으로 일오(1956-1960) 기간부터 실시한 '국가고문헌정리출판계획'과 십일오(2006-2010) 기간에 구축한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화를 구축하고 있다. 일부 '중의고문헌정리출판계획' 등과 같은 전문 분야의 고문헌 관리 정책도 있다.

둘째,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 체계는 일종의 위계적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최고 법인 헌법 이하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통과로 제정된 법률이 가장 상위 법률이다. 이하 행정법규가 있으며, 법률이나 행정법규 집행을 위한 규장 중 전문적인 분야의 부문규장 외에 행정규범성문건의 단계로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셋째,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률은 현재 '중국문화유산보호법(2013)', '중국비물질문화유산법(2011)', '중국공공도서관법(2018)', '중국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2017)'이 있다. 이들 4종의 법률은 중국국가도서관 이하 도서관의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공문화서비스 관련 규정으로 상호 해석 및 적용하고 있다. 그중 '중국문화유산보호법'은 '역사상 각 시대의 중요한 문헌자료 및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원고와 도서자료 등'을 보호 문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문헌 보호주의를 기본으로 긴급구조와 관리 강화의 방침을 관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고문헌 관리 행정법규는 정부원

의 '고문헌·진귀문물·도서 및 희귀생물보호조치(1950)'와 부록의 '고문화유적지와 고분조사발굴 임시규칙(1950)', '문화혁명기간 산실진귀문물과 도서회수 규정(1980)', '중국고문헌정리지시(1981)' 및 '중국문화유산보호법 실시 조례(2003)' 그리고 국무원의 '제일차 전국 이동가능문물 일제조사 전개 통지(2012)'가 있다. 이중 '중국고문헌정리지시'는 이후 고문헌 정리와 관리 문제의 시급함을 인지하게 하고 행정정책의 구축과 각종 법제화 제정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중국의 고문헌 관리 부문규장은 기관과 전문분야 규정으로 '문물보호기관 보호관리 임시세칙(1963)',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시행)(1986)',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2001)' 및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2003)'이 있다. 그중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은 전문 주제분야인 중의학교문헌의 연구 정리, 출판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규정이다.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은 1911년까지의 고문헌은 기본적으로 일급문물 고문헌 선본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문물경매 관리 임시규정'은 1949년 이전의 민국시기(1912-1949)의 문물은 경매 가능한 문물이며, 1911년 이전 문물은 경매 불가능한 문물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문물의 경매를 인정하나 주요 문물의 경우 경매우선권과 입찰경매인 범위한정권은 국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으로 중국의 고문헌 관리 행정정책 이하 주요 법률과 행정법규 및 부문규장을 종합적으로 도표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헌법	1954 2004	•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책	법제	제목	년	비고	
	법률	• 중국문화보호법	1982 2013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주관: 국무원 • 감독책임: 각 지방정부 • 국유유물소유권: 국가
			행정 법규		
	부문 규장	• 중의고문헌연구 정리출판 관리규칙	1986	• 관련기구: 국가중의관리국, 성시(省市) 위생청	• 중의학문헌에 대한 연구 와 관리 및 출판에 대한 규정
			• 문물소장품등급 표준	2001	• 고문헌: 일급문물 선본
• 문물경매관리임 시규정			2003	• 근거법률: 문화보호법, 문화보호법실시조례 • 관련기구: 국가문화국, 성시,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문	• 경매: 1949년 이전 문물 • 경매불가: 1911년 이전 문물 • 경매 우선권: 국가 • 경매입찰자 범위 한정권: 국가
행정규범성문건				• 중앙정부 • 성시(省市)정부	

〈그림 1〉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

5.2 시사점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고문헌 관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고문헌 관리는 법제화에 따라 추진되며, 법제화는 국무원 주관의 행정정책 구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문헌 관리의 양대 행정정책으로 '국가고문헌정리출판계획'과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이 있다. '국가고문헌정리출판계획'은 '일오 국가고문헌정리중점도서출판계획 기초' 이후 2006년의 '십일오 국가고문헌정리중점도서출판계획'으로 이어 졌으며, 이는

고문헌 정리의 분기점이 되었다. 또한 2007년의 행정정책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은 국가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고문헌정리출판계획'과 함께 전국의 각종 도서관에서 고문헌 보호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천토록 하고 있다. 즉,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 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의 인프라 구축과 문화수준 제고에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가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고문헌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다. 즉, 고문헌 보호와 장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제발전계획과 같은 맥락으로 30년 장기적 계획으로 두 개의 5년씩 10

년 단위로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1956년부터 1960년의 일오계획에서부터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십삼오계획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 및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자료와는 다른 수집과 보호 및 보존이라는 고문헌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 교육과 고문헌연구소의 설치 그리고 대학 내의 고문헌 관리 전공과 학과의 확대 방안과 같은 교육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성화 계획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발전 목적의 이공분야 위주 교육 주력으로 소홀히 해왔던 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고전독서의 권장과 고문헌의 현대 중국어로의 번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작업으로 고문헌 정리를 강조하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과 안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방을 하던 1981년에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실천되도록 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문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를 살필 수 있다. 예로 2017년에 보고된 전국 고문헌보호공정사업으로서의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의 결과 조사에 따른 조직기구의 구축은 특별하다. 즉, 1) 전국고문헌보호사업부간 연합회의, 2) 전국고문헌보호사업 전문가위원회, 3) 국가고문헌보호센터, 4) 중국고문헌보호협회, 5) 지방 각 분야 고문헌보호시스템(전국중의분야고문헌보호센터) 등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전국의 연합회의와 전문가위원회 및 고문헌보호센터와 보호협회 및

분야별 고문헌보호시스템의 구축은 체계적 고문헌관리 추진의 일례로 주목할 부분이다.

다섯째, 전문 주제분야의 하나인 중의학 분야의 고문헌 관리 법제를 살필 수 있다. 전문분야 법제인 부문규장은 주로 문화재 보호기관, 등급 및 경매 등에 대한 내용인 반면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은 중의학 고문헌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법제이다. 전국적 총괄기구, 중앙과 각 지방의 지도자조직, 전문기구, 전문단체, 예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급의 중의고문헌연구소(실) 설치와 중의고문헌연구 정리 종사 전문 인적자원 구비 규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 조사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정책 구축의 중요성과 국가 차원의 관리, 교육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및 전문기구의 설치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으며, 중의학분야 고문헌과 같은 전문분야의 특별관리 또한 특징적이다.

6. 결 론

이 연구는 1981년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 이래 2006년의 ‘십일오 국가고문헌정리중점도서출판계획’과 2007년의 ‘중화고문헌보호계획’의 양대 행정정책을 바탕으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및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였으며, 그중 고문헌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2013년의 법률 ‘중국문화재보호법’과 1981년의 행정법규 중발 37호

인 '중국고문헌정리지시'를 분석했다. 그리고 부문규장으로 1986년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시행)'과 2001년 문화부의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 및 2003년의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고문헌 관리를 위한 정책 구축의 중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고문헌 관리의 순기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문헌 관리를 위한 교육과 교육기관의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및 전문기구의 설치의 중요성, 그리고 중의학교문헌과 같은 전문분야 고문헌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16개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순위 세계 4위이다. 16개 세계기록유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료'와 '새마을운동 관련자료', 그리고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같은 3건의 근현대사자료 외의 13개는 모두 고문헌이다. 이처럼 기록의 나라인 우리나라의 고문헌 관리는 지역별로 또는 기관이나 도서관 및 박물관 별로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 일반 도서관 자료와는 다른 고문헌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효율적 관리 및 보호와 보존 및 이용 측면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 구축과 법제화 적용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되는 바를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한 중국의 법제화 사례가 국내 고문헌의 수집과 관리 및 보존 등 관련 업무의 제고와 이를 위한 법제화 추진 및 도서관 법제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현민. 2017.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정수점검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125-146.
- [2] 『國家古籍整理出版規劃』. [online] [cited 2018. 6. 11.] <<http://www.nlc.cn/>>
- [3] 國家典籍博物館. [online] [cited 2018. 6. 13.] <http://www.nlc.cn/nmcb/>
- [4] 김유승. 2007. 웹 아카이빙의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찰: 웹 정보자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5-24.
- [5] 김호정. 2010. 중국 행정법의 입법 및 규범체계. 『외법논집』, 34(1): 53-69.
- [6] 『文物拍賣管理暫行規定』.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
- [7] 『文物藏品定級標準』.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
- [8] 문준조. 2002. 『중국의 입법관련제도 및 입법기준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9] 深圳市 鹽田區 人民政府. [online] [cited 2018. 8. 10.] <<http://www.yantian.gov.cn/icatalog/bm/mzj/02/ffg/>>
- [10] 윤희윤. 2004.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23-40.

- [11] 『整理我國古籍的指示』.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
- [12] 中國古籍保護中心. [online] [cited 2018. 6. 19.] <<http://www.nlc.cn/pcab/>>
- [13] 中國古籍保護協會. [online] [cited 2018. 6. 19.] <<http://www.chinaabp.cn/>>
- [14] 中國國家圖書館. [online] [cited 2018. 6. 16.] <<http://www.nlc.cn/>>.
- [15] 『中醫古籍文獻研究整理出版的管理辦法』.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
- [16] 中華古籍保護計劃. [online] [cited 2018. 6. 11.] <<http://www.nlc.cn/pcab/bhjh/jj/>>
- [17] 『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pcab/bhjh/jj/>>
- [18] 中華人民共和國文化和旅游部. [online] [cited 2018. 6. 11.] <<http://www.mcprc.gov.cn/>>
- [19] 정이근. 2005. 중국법의 規範性文件에 대한 考察. 『공법학연구』, 6(3): 519-547.
- [20] 차미경, 송경진, 김나영. 2017. 국가R&D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법규 개선방안.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51(1): 147-17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Hyen Min. 2017. "An Analysis on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the Inventory Act in the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125-146.
- [2] *Plan on Organization and Publication State Ancient Books*. [online] [cited 2018. 6. 11.] <<http://www.nlc.cn/>>
- [3] National Museum of Classic Books. [online] [cited 2018. 6. 13.] <<http://www.nlc.cn/nmcb/>>
- [4] Kim, You-Seung. 2007. "A Study of Legal Issues for Web Archiv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3): 5-24.
- [5] Kim, Ho-jeong. 2010. Legislation and Norm System of Chinese Administrative Law. *Collected Papers of Foreign Laws*, 34(1): 53-69.
- [6] *Provisional Regulation on Civilization Auctioning*.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
- [7] *Standards on Grading Classification of Civilization Collections*.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
- [8] Moon, Joon-jo. 2002. *Research on Legislation Related Institution and Legislation Standard*. Sejo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Center.

- [9] Shenzhen City, Yantian GOV. [online] [cited 2018. 8. 10.]
〈<http://www.yantian.gov.cn/icatalog/bm/mzj/02/ffg/>〉
- [10] Yoon, Hee-Yoon. 2004. "On the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s and Legislations in Russi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3): 23-40.
- [11] *China's Old and Rare Book Organization Directive*.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
- [12] Preservation of the Classic Ancient Books. [online] [cite. 2018. 6. 19.]
〈<http://www.nlc.cn/pcab/>〉
- [13] Ancient Books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Association of China. [online] [cited. 2018. 6. 19.] 〈<http://www.chinaabp.cn/>〉
- [14] National Library of China. [online] [cited 2018. 6. 16.] 〈<http://www.nlc.cn/>〉
- [15] *Regulation on Management of Research, Organization, and Publication of Old and Rare Books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ield*.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
- [16] *Plan of Preservation of China Ancient Books*. [online] [cited 2018. 6. 11.]
〈<http://www.nlc.cn/pcab/bhjh/jj/>〉
- [17] *China's National Civilization Protection Law*. [online] [cited 2018. 6. 3.]
〈<http://www.nlc.cn/pcab/bhjh/jj/>〉
- [18]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line] [cited 2018. 6. 11.] 〈<http://www.mcprc.gov.cn>〉
- [19] Jeong, Ih-geun. 2005. "Review on Normativity Documents of Chinese Law." *Study on Public Law*, 6(3): 519-547.
- [20] Cha, Mikyeong, Song, Kyeong-Jin and Kim, Na-Young. 2017. "A Study on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for Open Access of Research Papers from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147-174.